# 국민연금 장애심사



#### 용어의 정의

#### ▶ "초진일"

: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"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"이 때 "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"이라 함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의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되, 증상이나 징후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병의 진단일을 초진일로 할 수 있음

#### ▶ "완치일"

- :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1)~3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하며, 분류별 장애판정 기준에서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
  - 1)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
  - 2)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
  - 3)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,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

#### ● 국민연금 장애연금

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(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)되었으나,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며, 장애심사를 통해 결정된 장애정도(장애등급 1~4급)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.

- ◉ 장애결정기준일(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, 제70조제3항 등)
  - ▶ 초진일로부터 **1년 6개월 경과일 전에 완치일**이 있는 경우 : **완치일**
  - ▶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: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
  - ▶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의 지급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: **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**
- ◉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위한 필수구비서류(급여 청구서류 제외)
  - ▶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
  - ▶ 국민연금 장애분류별 소견서 1부
  - ▶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, 산재 장해급여내역서(산재 자료의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요함)
  - ※ 공단이 위 자료에 대하여 열람.발급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직접 제출 불필요
  - ▶ 초진일 및 장애결정기준일의 진료기록지. 검사자료(장애분류별 구비서류 참고)
  - ※ 국민연금법 제67조에 의한 장애연금 지급 심사 외에도 기타 국민연금급여 지급에 있어 의학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때(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 및 유족연금 수급권 확인 심사 등)에도 상기 구비서류 제출 요함

## 국민연금 장애심사 구비서류(간의 장애) —

● 상병명 : 간경변, 간암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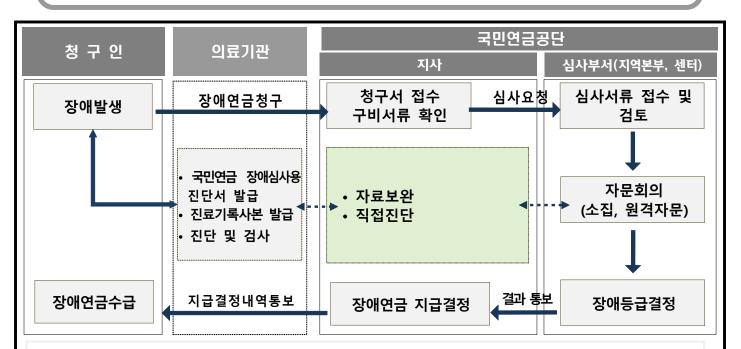
구비서류		종류 및 기재사항				
1.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		■ <b>주요 치료내용</b> (치료기간, 경과 등) 및 <b>장애상태, 각종 검사소견</b> 등 상세히 기재				
2. 국민연금(간 장애) 소견서		※ <u>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서식</u> (장애심사규정 별지 제1호~제16호) 사용 ※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(또는 시체 검안서) 첨부				
0 +111111	진료기록지	■ 초진 당시 <b>과거병, 상병명, 내원 당시상태, 치료내용</b>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☞ 응급실기록지, 외래기록지, 경과기록지, 입퇴원요약지, 일반소견서 등 ※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상 ***로 조회되는 경우 상병명, 요양기관명 등을 확인하여 제출				
3. 초진시점	검사결과지	■ 검사결과지(CT, 초음파, MRI, PET검사결과판독지, 조직검사결과지, 위내시경 판독결과지 등) ■ 간기능검사결과지				
4. 1년 6개월 경과시점	진료기록지	■ 전・후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 □ 간경변의 중증도(복수/간성뇌증/식도정맥류출혈 유무 및 정도/간신증후군/ 자발성세균성복막염여부 등), 치료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 □ 간암치료내용(간동맥화학색전술, 고주파열치료술, 항암치료 등)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 □ 간을 이식받은 경우 간이식수술기록지, 수술병리검사결과지, 간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 자료(임상증상〈간이식 후 거부 반응유무〉, 치료내용〈경피경간 담도배액술 등〉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) 첨부				
	검사결과지	■ 전・후 6개월간의 검사결과지  □ 간기능혈액검사결과지(총빌리루빈, 알부민, 프로트롬빈시간〈초, INR〉등) □ CT, 초음파, MRI, PET검사결과판독지, 조직검사결과지, 위내시경판독결과지 □ 간암치료를 위한 시술내용 확인 가능한 영상의학검사결과지(간동맥화학색전술, 고주파열치료술 등) ■ 간을 이식받은 경우 간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의 검사결과지 첨부				
5. 청구시점	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	■ <u>최근 6개월간</u> 의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☞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등 자료 제출				
● 아래 <b>완치 인정조건</b> 에 해당되는 경우 <b>완치일 시점의 장애정도</b> 도 판단합니다.  - 간을 이식받은 경우 :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						

- ※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는 장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징구하며, 위 사항 이외에 심사 중 추가자료 보완 또는 재검사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간암이 발생한 경우는 「악성신생물의 장애」 소견서 및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제출바랍니다.

6.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번호	로 전화주시면	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
【팩스번호 :	, 담당자 :	]



### 국민연금 장애심사 업무 흐름도



- ♪ 장애심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.
- ▶ 제출된 심사자료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자료요청이나, 공단 자문 의사의 직접진단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,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는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경우 지사 담당자 에게 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국민연금공단에서 「간의 장애」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신 경우 해당 자료의 열람(활용)에 동의하시면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.
- ✓ 잠깐! 「간의 장애」의 최저 등급 인정기준은?

장애분류	세부구분	장애등급	장애판정기준
간	기능장애	3급	<ul> <li>◆ (공통)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있는 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있는 경우에 해당하고</li> <li>◆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(Child-Pugh score) B 등급인 경우 아래 증상 중 2가지 이상의 소견 또는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(Child-Pugh score) C 등급인 경우 아래 증상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</li> <li>- 복수, 간성뇌증, 정맥류, 정맥류출혈 병력, 자발성세균복막염, 간신증후군, 합병증 수술 치료병력 등</li> </ul>
	장기이식	4급	◆ 간이식

-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모시며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.
- 국민연금공단은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

연금 신청 시 또는 장매심사 시 금품, 향응,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학연, 지연, 혈연 등의 사유로 일부 고객에게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경우를 보거나 들으신 경우 공단 홈페이지 클린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국민연금 홈페이지 www.nps.or.kr → 클린센터 → 국민연금 헬프라인(www.redwhistle.org)]

l 국민연금공단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.



##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

※ 뒤쪽의 유의	기사항 및 기재의	요령을 읽고 작성하	여 주시기 바라며,	[ ]에는 해당되는 곳	산에 √표들	합니다.			
	성명			생년월일 성별 [ ] 남 [ ] 0					
대 상 자 인적사항	전화번호(지	· 타택 )		휴대전화번호					
54418	주소								
	장애분류	/ 장애부위							
장애분류	장애의 :	원인 상병명							
	부상일 !	또는 발병일							
장애발생 및 완치일	초	진일							
	온	·치일							
				사소견, 현재까지의 치 별지 제2호 내지 별지					
치료내용									
및									
장애상태									
기존 장애(	동일부위)	[ ]유[ ]무	발생시기		기존 정	당애상태			
향후		활동 능력 또는 에 관한 의견				예후			
장애상태	변동가능성	[ ]유[ ]무	변동가능사유						
위와 같이 장	애상태를 진던	난합니다.							
						년	월	일	
진단기관명		직 인	진단 의사명			(서명 5	돈는 인)		
소재지				의사 면허번호					
의료기관지경	정번호			전문의 자격번호					
				전문의 과목					

#### 유 의 사 항

- 1. 본인 확인은 진단의사가 주민등록증과 대조(미성년자인 때는 기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)하여 확인하고 진단서 및 장애분류별 소견서에 날인한다.
- 2.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위해 진단서 발급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, 해당 상병이 완치된 경우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되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다.
- 3. 진단서의 구체적인 장애상태는 장애분류별 소견서에 기재하며,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진료기록, 검사결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.

#### 기 재 요 령

- 1. 다음과 같은 장애상태, 임상증상 및 수술(수술명, 수술일), 투약내용(약물명, 용량) 등의 치료내역, 각종 검사결과, 보조기 착용여부 등의 결과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  - 가. 눈의 장애: 최대교정시력 및 시야협착 소견과 시야·굴절검사 결과, 질환에 따라 칼라안저사진, VEP(시유발전위도검사), OCT(시신경망막CT), FAG(형광조영술), ERG(전기생리적검사) 등
  - 나. 귀의 장애: 평균순음청력역치검사(3회), 최대어음명료도(3회), 청성뇌간반응검사, 임피던스검사 등
  - 다. 입의 장애: 언어정도(자음정확도, 실어증지수 등), 섭취방법 및 섭취 가능한 음식물의 내용, 개구정도, 교합상태, 체중 감소 정도 등의 소견과 해당부위 CT/MRI, 연하조영검사결과 등
  - 라. 지체의 장애: 운동가동범위, 근력, 운동의 정밀성, 속도 및 내구성, 강직 등의 소견과 해당 부위 X-ray/CT/MRI, 근전도 검사 결과, 뇌파검사결과, 호엔야척도 등
  - 마. 정신·신경계통 장애: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명, 상태, 치료내용 및 투약, 뇌전증의 경우 발작양상, 빈도, 주당 횟수, 투약등의 소견과 인지기능저하시 임상심리검사결과, CDR/GDS 등
  - 바. 호흡기의 장애: 호흡곤란의 정도, 흉부 X-ray/CT/MRI, 폐기능검사결과 등
  - 사. 심장의 장애: 심질환의 중증정도, 흉부 X-ray, 심전도, 심장초음파검사결과, 운동부하검사결과, 핵의학검사결과 등
  - 아. 신장의 장애: 최초 투석일(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) 및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받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, 혈액검사결과(혈청크레아티닌, 사구체여과율) 등
  - 자. 간의 장애: 복수(중증도, 지속여부), 식도정맥류(중증정도, 출혈여부, 횟수), 간성뇌증, 복막염 병력 등의 소견과 혈액 검사결과(알부민, 총빌리루빈, 프로트롬빈시간연장(초)/INR), 초음파/CT 등
  - 차. 혈액·조혈기의 장애: 임상증상, 일반상태 등의 소견과 수혈, 항암(약물명, 용량, 투여기간), 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내용, 골수검사결과, 혈액검사결과(혈색소, 절대호중구수, 혈소판 등) 등
  - 카. 복부·골반장기의 장애: 건강 시 대비 체중감소정도(Kg), 장루(요루) 보유여부, 인공방광 수술여부, 간헐적 도뇨(CIC) 시행 여부 등의 소견과 혈액검사결과(혈색소량, 알부민 등), 해당부위 X-ray/CT/MRI, 요역동학검사결과 등
  - 타. 안면의 장애: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정도, 해당부위 X-ray/CT/MRI
  - 파. 악성신생물(고형암)의 장애: 임상증상, 일반상태 등의 소견과 수술, 수혈, 항암(약물명, 용량, 투여기간), 방사선 등의 치료내용, 해당부위 CT/MRI/초음파/내시경/조직검사결과 등
- 2. 기존장애(질병포함): 동일부위에 현 장애 이외의 장애를 이미 지니고 있는 경우이며 발생시기, 장애상태 등을 기재
- 3. 향후 장애상태에 관한 의견: 일상생활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진단의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
- 4. 진단서에 있는 용어 정의
  - 가. 초진일: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하며,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초진의료기관이 아닌 경우는 "미상"으로 기재
  - 나. 완치일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을 말하며, 객관적인 자료로 그 근거가 확인되어야 함
    - 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
    - ②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
    - ③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,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

### 국민연금(간 장애) 소견서

성 명			생년월일				성별	]	]남	[	]여
※ 장애상태(	년	월	일 현재)				(해당	항목	에 ∨ 丑	표하	세요.)

#### 〈 A표: 만성 간질환의 증상 중증도 구분표 〉

중증도		임 상 증 상	해당 항목
	1)	난치성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	
	2)	4등급의 간성뇌증이 있거나 만성간성뇌증이 있는 경우	
'	3)	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정맥류 출혈이 있는 경우	
	4)	제1형 간신증후군이 있는 경우	
	1)	3등급의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	
	2)	3등급의 간성뇌증이 있거나 간성뇌증이 반복하는 경우	
2	3)	정맥류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	
2	4)	자발성세균성복막염이 반복되는 경우	
	5)	제2형 간신증후군이 있는 경우	
	1)	2등급의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	
	2)	1,2등급의 간성뇌증이 있는 경우	
3	3)	정맥류 출혈이 발생하였거나 정맥류 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	
	4)	자발성세균성복막염이 발생하였거나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	
	1)	1등급의 복수가 있는 경우	
4	2)	정맥류가 존재하는 경우	
	3)	합병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경우	

#### 〈 B표: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(Child-Pugh score) 〉 (※ 해당 항목에 점수 기재하세요.)

구 분	1점	2점	3점	해당 항목
혈청 빌리루빈(mg/dl)	<2.0	2.0~3.0	>3.0	
혈청 알부민(g/dl)	>3.5	2.8~3.5	<2.8	
프로트롬빈시간연장(초)	<4	4~6	>6	
INR	<1.7	1.7~2.3	>2.3	
복수	없음	1등급 또는 2등급	3등급 또는 난치성	
간성뇌증	없음	1등급 또는 2등급	3등급 또는 4등급	

※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(Child-Pugh score) A등급은 5∼6점, B등급은 7∼9점, C등급은 10점 이상으로 분류한다.

#### < C표: 일반상태 구분표 >

구 분	일 반 상 태	해당 항목
1	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,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(가사, 사무등)은 할 수 있다.	
2	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 있다.	
3	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 있다.	
4	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.	

간이식 수술일	년	월	일	
기타 의사소견				

※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(예, 검사결과, 의무 기록 등)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 명칭: 의사면허번호: 전문과목: 의사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### 국민연금(악성신생물(고형암) 장애) 소견서

성	명		생년월일				성별	[	]남	[	]여	
※ 장이	배상태(	년 월	일 현재)				(해당 항목	루에 \	√ <del>표</del>	하세요	요.)	
		유 [ ]	무 [ ]	수 술	일		년		월	일		
	수술	수 술 명				[ ]	근치적	[	]	그식적		
치		항암제명	j	치료기간			반	응				
료	항암					CR [ ]	PR [ ]	SD [	]	PD [	]	
내	화학 요법					CR [ ]	PR [ ]	SD [	]	PD [	]	
용	H					CR [ ]	PR [ ]	SD [	]	PD [	]	
	방사선	치료기간:			반응	: CR [ ]	PR [ ]	SD [	]	PD [	]	
	요법	치료기간:			반응	: CR [ ]	PR [ ]	SD [	]	PD [	]	
	구분		일반 상태									
일	1	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,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 (가사, 사무 등)은 할 수 있다.										
반 상	2	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 있다.										
태	3	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 있다.										
	4	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.										
		구 분	검사일 검사 결과									
	L	<b>배시경검사</b>										
	조직검사											
검 사	컴퓨터	서단층촬영(CT)										
· 항	자기	공명영상(MRI)										
목	양전자	방출단층촬영술 (PET)										
		벼스캔검사 Bone scan)										
	;	기타 검사										
기타 의사소견												
			~ 키지 버티의 되지			TIU-	. — — — 1 — 1	/ All				

년 월 일

의료기관 명칭: 의사면허번호: 전문과목: 의사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<sup>※</sup>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(예, 검사결과, 의무기록 등)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